



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취약점 관리의 통합!!
일원화된 관리 프로세스 제공

Omni-VM은 다양한 취약점 진단 솔루션을 연동하여,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취약점 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, 보안지수를 산정하여 높은 가시성의 보안 현황을 제공하는 통합 취약점 관리 포탈 시스템입니다.

Over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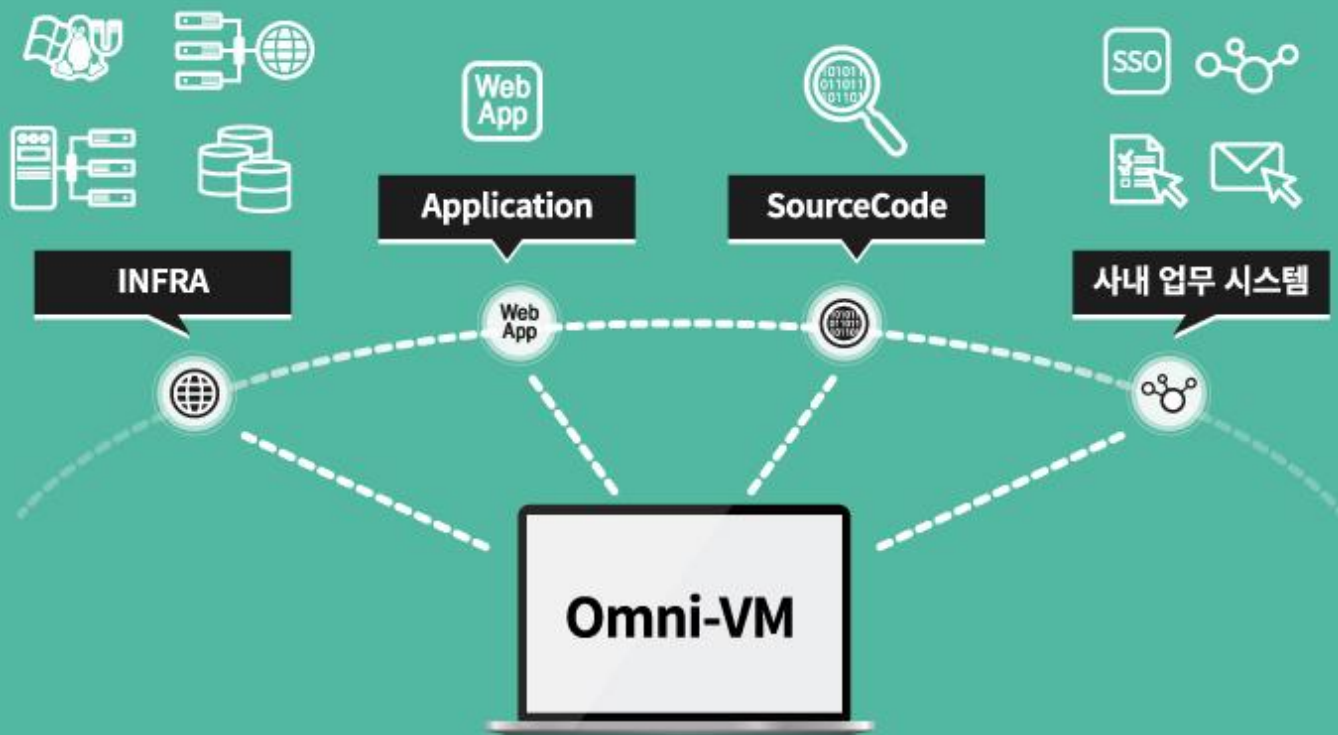
금융보안 규제 패러다임이 타율적 규제에서 원칙중심의 자율 규제로 변화

- 자체 점검 및 책임을 강화하고 IT보안 역량 향상 도모
- 민간 자율의 보안성 검토 체계를 구축하고, 금융보안 리스크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강화

효율적인 취약점 통합 관리의 필요성 증가

- 다양한 진단 도구에 대한 관리 포인트의 증가
- 전사 취약점 현황에 대한 가시성 있는 정량적 표현 요구사항 증가
- 진단 결과에 대해 자산 및 중요도 별 보안지수 산정의 어려움
- 통합된 취약점 현황 화면 필요

Omni-VM 연동 범위



통합 취약점 관리 포탈 시스템

Omni-VM 주요기능



취약점 통합 관리

- 다양한 취약점 진단 솔루션 연동
- 자산 시스템과의 연계
- 관리적/물리적 취약점 및 컨설팅 내역 등록 및 관리
- 취약점 점검 결과를 단일 인터페이스로 제공



취약점 관리 프로세스 확립

- 취약점 점검부터 조치 이행까지의 프로세스 제공
- 각종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리 체계구축
- 취약점 관리 업무 프로세스 별 역할 정의
- 프로젝트 단위의 취약점 관리 지원(보안성 검토)



취약점 진단

- 웹포탈을 통한 다양한 진단 솔루션 자동진단 수행
- 특정 사유 및 기간을 설정하여 예외 처리
- 지연/누락 업무에 대한 알람
- 취약점 결과 및 이행 내역 관리



보안 취약점 현황 제공

- 진단 결과에 대해 전사 보안지수를 제공
- 개별 진단 도구의 취약점 리포트 제공
- 취약점 결과 현황을 차트 및 다양한 형태로 제공
- 각 주요 상황에 대한 통계 자료 제공

Omni-VM 특징점

사용자 측면

- 반복적 수작업을 최소화하여 보안 업무 생산성 향상
- 점검 및 조치 프로세스의 정립은 보안 및 시스템 운영자의 업무 역할을 명확히 함
- Web을 통해 사용자 역할 및 권한 별 UI 제공

관리자 측면

- 조직의 성격에 맞는 일원화된 보안 취약점 관리 업무 프로세스 구축
- 다양한 시스템의 통합으로 관리 포인트 감소
- 주기적 알림을 통한 지연 및 누락 업무의 최소화

기능적 측면

- 스캐너 접속 없이 중앙에서 점검 수행 및 결과 확인
- 사내 업무 시스템(Mail, SSO, 결제 등)과 연계된 관리 체계 구축
- 진단 수행 및 결과, 조치이행 등의 이력 관리

핵심 요소와 법규, 지침 매핑

순번	핵심요소	주요 인증지침
1	전자금융거래법	- 제21조의 3(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·평가) ① 금융회사 및 전자 금융 업자는 전자 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 금융 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·평가 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4 ②금융회사 및 전자 금융 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·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안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2	금융 전산 보안 강화 종합 대책	- CEO 책임하에 취약점 점검 및 보안조치 이행 철저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절차 마련 등 취약점 보안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제도 마련 - 非 금융 전산시스템까지 취약점 점검·보안관계 확대 전자금융기반시설 이외의 교육·홍보용 홈페이지, 그룹웨어 등 내부 업무 지원 시스템에 대해 취약점 점검 의무화
3	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	- 제17조(취약점 분석·평가)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·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. ②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·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대상, 기간, 절차, 방법 등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 ④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·평가 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위해 점검 항목별 조치 이력 관리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4	정보보호관리체계 ISMS	-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립·운영하고 있는 기술적·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 - 제 18조의 11 정보시스템이 알려진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적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들은 조치하여야 한다.

※ 관련 법령 근거
 금융위원회 「전자금융거래법」
 미래창조과학부 「금융 전산 보안 강화 종합 대책」, 「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지침」, 「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」